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제39조제7호, 제39조제8호, 제39조제9호. 제72조제5항 관련)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의 용도 비율의 경우에는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0 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2. 상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7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사용되는 부분, 「주택법 시행령」제4조의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